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무인화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개념의 무인자동 주차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조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지 서식에 이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실태”라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과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이하 “자동이송주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면공지”를 “자동차의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면공지”로, “않을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되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 제5항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나목 중 “출입구:”를 “출입구 및 승하차장(기계식주차장치 내 자동차의 입고 또는 출고를 위해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승차하

거나 하차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확보하여야 한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주차로봇 내부에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계식주차장치에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송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는 진입로의 너비가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 양방향 주행 불가능 : 3미터 이상

나. 자동차 양방향 주행 가능 : 6미터 이상

6.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미터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으로 한다),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까지의 경우에는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 2.15미터”를 “경우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주차하는 방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15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자동차”로, “통”을 “공간의 통”으로, “이상으로”를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3미터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을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직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이송한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으로 한다.

다.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되, 주차로봇의 이동·회전·정지 과정에서 자동차 및 시설물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주식주차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차량 크기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가 주차 가능한 차량 제원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법 제19조의9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즉시 별지 제15호의6 서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 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및 나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바.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자동이송주차장치에 한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실태”를 “주차 수급실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 중 첨부서류 사용검사란 제6호 “설치장소 약도”를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타이어리프트형에 한함)”로 하고, 첨부서류 정기검사란 “설치장소 약도”를 “없음”으로 하며, 첨부서류 수시검사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6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단위: 대, 면)

구 분			주 차 수 요			주 차 시 설 현 황						확 보 율		주 차 요 금		
			계 (A)	등록 대수	등록 외의 대수	계 (B)	노 상	노외		부설		B-A	B/A (%)	최저	최고	평균
								공 영	민 영	주 택	비 주 택					
○○○ 동 (○○○ 지 역)	1 블 록	이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이륜자 동차														
	2 블 록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단위: 개소)

구 분		추락방지안전시설 설 치 여 부				미끄럼방지시설 설 치 여 부				미끄럼 주의 안 내 표 지 판 설 치 여 부				보행안전시설 설 치 여 부			
		계	설 치	미 설 치	해 당 없 음	계	설 치	미 설 치	해 당 없 음	계	설 치	미 설 치	해 당 없 음	계	설 치	미 설 치	해 당 없 음
○○○ 동 (○○○지 역)	1블록																
	2블록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단위: 개소)

구 분		검 사 이 행 여 부				관 리 인 배 치 준 수 여 부				사 고 조 사 권 고 사 항 이 행 여 부			
		계	이행	미이 행	해당 없음	계	준수	미준 수	해당 없음	계	이행	미이 행	해당 없음
○ ○ 동 (○ ○ 지 역)	1블록												
	2블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시설물	⑤ 위 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 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m ²
	⑨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 부 서 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출 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 의 기 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 계 부 서
계 획 서 작 성 통 보	접 수 검 토 결 재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 20일 수시검사 : 30일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사 종류	사용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	
주차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인증번호	명칭
	종류 및 방식	
	보수사	전화번호

설치장소

기계식주차장의 직전 검사일 또는 변경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제16조의2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전문검사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첨부서류	사용검사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윤반기 계량증명서 6.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자동이송주차장치에 한함)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주차장법」 제1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정기검사	없음	
	수시검사	1.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윤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정밀안전검사	없음	

작성방법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 제작사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제작사, 인증번호, 명칭란에는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직전검사일 또는 변경사항란에는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의 경우 직전검사일, 수시검사의 경우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	→	접수 담당부서	→	검토 담당부서	→	승인 담당부서	→	현장검사 담당부서	→	결재 담당부서	→	결과 통보
---------------------------	---	------------	---	------------	---	------------	---	--------------	---	------------	---	-------

자동이송주차장치 주차장 설치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설치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주차장	④ 위 치			
	⑤ 규 모	면, m ²		
	⑥ 사용검사일	년 월 일		
	⑦ 안전도인증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 첨부서류: 1.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3.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4. 첨부서류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 ③ (생략)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u>	④ -----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실태-----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u>노외주차장</u> 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 ----- ----- <u>노외주차장과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이하 “자동이송주차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u>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

[illegible]

가.·나. (생략)
<신설>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면공지 --- 아니할 수 있되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 제5항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확보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확보하여야 한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주차로봇 내부에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계식주차장치에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

3. (생 략)

<신 설>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생 략)

나.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신 설>

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송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는 진입로의 너비가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 양방향 주행 불가능 : 3미터 이상

나. 자동차 양방향 주행 가능 : 6미터 이상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입구 및 승하차장(기계식주차장치 내 자동차의 입고 또는 출고를 위해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
-

6.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②·③ (생 략)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는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미터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으로 한다),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
----- . 다만, 가목 및 나목까지의 경우에는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나. (생략)

<신설>

<신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

에는 주차단위구획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되, 주차 로봇의 이동·회전·정지 과정에서 자동차 및 시설물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주식주차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차량 크기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가 주차 가능한 차량 제원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

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즉시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 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 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 8. (생략)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생략)

②·③ (생략)

4. -----

경우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주차하는 방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15미터 -----
-----.

5. 자동차-----

-- 공간의 통-----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3미터 이상)으로 ---.

6.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직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이송한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_____

_____.

_____.

가. ~ 마. (생 략)

바.설치장소 약도

2.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3.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
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
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 나. (생 략)

다.설치장소 약도

② ~ ⑧ (생 략)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차장 현장설치 평면도
(자동이송주차장치에 한
함)

<삭 제>

2. -----
--. ----- 각 목-----

-----.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2027년 1월 1일-----

-----.

1. ~ 5. (현행과 같음)